



제 417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등〉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41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신건강 및 행동 치료·상담 지원과 보호자 협조 규정	3
2.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정을 마련	8
가. 물리적 제지 관련 규정	12
나. 분리조치 관련 규정	15
※ 참고자료	
- 안 제18조의4와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조문	2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50인

나. 발 의 일 : 2024. 7. 5.

다.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신건강 및 행동 치료·상담 지원과 보호자 협조 규정

개정안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학생의 보호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생략)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u>교육청</u> 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② ----- ----- ----- <u>교육청</u>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② (생략)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

현행	개정안
<신설>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육복지 지원학생,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¹⁾임.

특히 수업 중 지속해서 소리를 내거나 물건 던지기, 자리 이탈, 불순응행동, 학습 참여 거부 등 심리·정서 또는 행동의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들 학생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品行장애 등으로 나뉘며 코로나 19 이후 우울, 불안 증세가 심화되면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실 내 신체적 공격, 욕설, 폭언, 교실 이탈 등 학생 행동

1)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

연도	교육복지 지원대상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2016	238,978명	46,954명	85,012명
2021	310,391명(+29.9%)	168,645명(+259.2%)	103,695명(+22%)

자료: 교육부

문제로 인하여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²⁾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개정안에 따를 때, 학생들은 정서·행동 문제를 겪을 때 적시에 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들은 이러한 지원 시스템 덕분에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던바³⁾,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⁴⁾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절차가 결여

2)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위기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87.1%에 달함.

3) (의안번호 2123722,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발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되어 있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학 전문가가 아닌 교사와 학교장이 상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10,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2,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에도 정서행동 문제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의 조문이 있으므로⁵⁾,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교육청 의견⁶⁾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특정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4) '23.8.23. 제409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5) 구체적인 조문은 붙임자료 참조.

6) <교육청 제출 의견>

발의안 내용	교육청 제출 의견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서울) 교원의견 듣는 부분 삭제 (경기) <u>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u> 등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경북) <u>교원의</u> 의견을 들어 (전남) 담임교사, <u>특수교사, 보건교사</u> , 전문상담교사, <u>전문상담사의</u> 의견을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	(경기) <u>정신건강 전문가의</u> ~ (전남) <u>전문의 및 국가공인 상담심리전문가</u>

교육복지·학생생활·위기관리 등 기존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되,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약칭을 “교육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표현은 안 제20조의4제2항에서 한 번만 사용되고 있어 약칭으로 얻어지는 문자 절약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약칭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⁷⁾.

7)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 231p

따라서 약칭은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무절제한 약칭 사용을 피하고 정의조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칭으로 얻어지는 문자절약의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약칭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정을 마련

최근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심사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4개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

(단위: 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1,197	2,269	3,035	5,050

자료: 교육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⁸⁾에 근거하여 2023년 9월에 「교원의 학생생

8)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제정되었음.

해당 고시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교원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 행하는 ‘물리적 제지’⁹⁾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하는 ‘분리조치’¹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¹¹⁾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생활지도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훈육’의 방식으로 물리적 제재와 분리조치를 고시에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 또한 존재함¹²⁾.

한편, 학교 내 분리조치 장소로 활용되는 Wee 클래스는 전체 12,100개 학교 중 8,863개 학교(73.2%)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6,178개 학교 중 3,693개 학교(60%)에만 설치되어 있음.

< Wee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단위: 개, 명)

구분	초	중	고	특수	기타	계
학교 수	6,178	3,265	2,380	194	83	12,100
Wee클래스 수	3,693	2,843	2,212	78	37	8,863

* 학교 수와 Wee클래스는 2023년 4월, 전문상담교사 인원은 2022년 10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2) 국회입법조사처,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23.12.29.

이처럼 많은 학교에 Wee 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등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분리조치를 위한 전담인력 등 인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가. 물리적 제지 관련 규정

개정안은 ‘물리적 제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u>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u>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교육감은 제2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u> <u>-----</u> <u>-----.</u>

개정안에 따를 때, 물리적 제지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요건에 부합하는 물리적 제지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¹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리적 제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보건복지부는 물리적 제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아동 권리 보호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¹⁴⁾ 법률에 규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물리적 제지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물리적 제지가 허용되는 범위를 다소 엄격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제2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위험 예방과 교원·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13)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은 공동성명(‘24.7.19.)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교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함을 명시하고, 고시 제12조제5항¹⁵⁾에 명시된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나. 분리조치 관련 규정

개정안은 ‘분리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4(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학생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분리조치를 한 경우 분리조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

현행	개정안
	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인계된 학생을 위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분리조치 운영실태를 점검·조사·감독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의4제1항(이하 조명은 생략)은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물리적 제지와 마찬가지로 분리조치는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한 견지에서 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분

리조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2항에서는 고시 제12조제7항¹⁶⁾과 같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도록 하고, 보호자 인계가 어렵다면 교육청에 학생을 인계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안 제5항에서는 교육감이 인계된 학생을 위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자의 「초·중등교육법」상 의무¹⁷⁾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할 것과 적극 협력할 것에 기반한 조치로 보이며,

최종 인계 주체를 교육청으로 규정한 것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한 것과 같이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문제 해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인 것으로 이해됨.

1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7)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안 제2항 단서의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보호자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청에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보호자가 해당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3항에서는 교원이 분리조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사실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안 제4항에서는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면서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했음.

분리조치에는 교실 밖의 장소로 분리하는 것 외에도 교실 내 다른 좌석 등으로 이동시키는 등 교실 내 분리조치 또한 포함됨¹⁸⁾. 현행 고시 제12조제10항¹⁹⁾에서는 개정안과 달리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통보

1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1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분리조치를 교실 밖 장소로의 분리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고에 따른 업무 가중을 방지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분리조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성
이 있음.

한편, 안 제4항은 교실 밖 장소로 분리조치된 학생과 분리장소까지
동행, 분리장소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업무
를 수행할 별도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분리조치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규정임.

교육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이 대통
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안 제9항)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나²⁰⁾, 별도의 공간
과 전담인력을 확보하는데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부는 교실 내 분리조치까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별
도 공간으로 분리조치한 때에만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

2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추계번호24C1761), 국회예산정책처, 2024.7.25.

분리조치에는 교실 내 이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 제4항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라는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및 인력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항은 정당한 분리조치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며, 안 제8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매년 분리조치 운영실태를 점검·조사·감독하고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²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점검·감독’을 삭제하고 분리조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84

2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10,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제8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위기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포함해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지도 및 위기학생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⑨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선정 및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자격 및 운영, 배치,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32,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학생, 부모 등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 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시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에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해 교육감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학생별 지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 기준·절

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학생 본인, 부모 등 보호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2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절차, 제12조에 따른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심의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6.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내지원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후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